## 특허 교육 1회차 요약

## 1. 특허법상의 실시

- 특허법의 발명 분류:
- **물건 발명**: 물건(물품, 물질)을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 전시.
- 방법 발명: 특정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청약.
- 제법 발명: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을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 또는 전시.
- 주요 실시 형태:
- 생산: 물건을 만드는 모든 행위 (주요 조립 포함).
- 사용: 기술적 효과를 실현시키는 행위.
- **양도**: 소유권 이전(판매 또는 증여).
- 대여: 일정 기간 유상/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.
- 수입: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행위.

#### 2. 실시 행위의 독립성

- 각 실시 행위는 독립적으로 특허권 효력을 가짐.
- 예외:
- 판매 이후 소유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 효력에서 자유로움:
  - 1. 소유권 이전설: 소유권이 특허권보다 우선.
  - 2. 목시적 허락설: 판매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.
  - 3. 소모이론: 적법한 판매로 특허권 효력 소진.

## 3. 타법과의 관계

• 특허권자는 관련 법률(의약품, 농약 등)에 따라야 하며, 필요시 특허 존속 기간 연장 가능.

#### 4.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

- 권리능력:
- 자연인/법인: 특허권 취득 가능.
- 비법인: 특허권 취득 불가.
- 외국인: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을 경우 인정(평등주의 및 상호주의 적용).
- 절차능력:
- 자연인: 제한 능력자는 법정대리인 필요.
- **법인**: 대표자가 절차 수행.
- 비법인: 관리인이 있으면 절차 가능.
- 재외자: 특허관리인을 통해 절차 수행.

# 5. 특허 심사 및 요건

- 심사 종류:
- 방식 심사: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.
- 실체 심사: 발명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심사.

- 실체 심사의 흐름:
- 출원 → 방식 심사.
- 심사청구(출원 후 5년 이내).
- 의견서/보정서 제출 후 특허 결정 또는 거절.

# 6. 특허 요건

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:
- 발명자, 승계인, 공동출원인.
-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:
- 발명 도용자, 반사회적 법률행위.
- 기타 요건:
- 공공질서, 법률 및 조약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.

# 핵심 정리

- 실시 태양: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 등.
- 실시 독립성: 각 행위는 별도로 판단.
- 권리능력: 자연인, 법인, 외국인에게 조건부 인정.
- **심사 과정**: 방식 심사 → 실체 심사.